

연구윤리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윤리강령 및 행동규정”에 표명된 연구자로서의 윤리 이념과 원칙을 토대로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윤리 기준을 정하고 연구윤리 위반을 예방하며, 연구윤리 위반 시 공정한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과 연구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의 기준

제1절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4조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 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관련 법규 준수의무)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

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2절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제9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② 저자들은 본교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12조 (저자결정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2. 데이터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4. 최종 원고의 승인 등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13조 (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15조 (데이터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 표본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6조 (직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소유권) 교수 또는 연구원이 본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연구의 결과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유이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과 소유권 문제)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을 옮길 때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을 경우 데이터의 소유 또는 공유 문제는 연구책임자와 본교 또는 연구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18조 (데이터 공유 및 공개) 연구책임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표한 연구논문의 데이터 및 표본을 자신의 책임 하에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교수의 기본 책무) ①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지도교수로서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연구 참여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공정하게 연구원의 공적을 인정하고 저자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을 연구 조교로 고용하는 경우 교육자로서 학생이 창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권익보호,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20조 (연구 환경 조성·유지의무) ① 지도교수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행위가 존중되는 연구 환경을 유지해야 하고, 연구원들이 연구수행에 책임감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연구원의 인종, 성, 나이, 민족, 성적 취향 등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연구원이 차별 없이 지도 및 감독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부당한 저자자격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고, 연구원과 맺은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연구원의 채용 및 대우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연구비 및 실험재료 등과 같은 연구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⑤ 여성이나 소수자집단의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성차별이 없어야 한다.

제21조 (연구지도와 심사) 지도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연구원의 연구와 논문 작성은 성실히 지도하고, 자신이 지도하는 연구가 잘 수행되었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를 해야 한다.

제22조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도) 지도교수는 박사후연구원이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다른 연구원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제23조 (연구책임자의 책임범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된 재정지출, 직원교육, 데이터 수집·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시에 연구결과가 악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 (안전관리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 점검·진단·훈련, 안전

보호 장치·시설의 관리와 운용,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유해 화학물질·실험폐기물·방사능·미생물 누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주 여부를 결정할 때 연구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의 존재 유무와 그 설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25조 (인용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⑧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26조 (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7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 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여기에서 ‘삭제’ 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3. 표절: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게재: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

제28조 (아이디어 표절)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③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0조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31조 (중복게재)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 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 또는 발행인과 중복게재 예정 학술지의 편집인 또는 발행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2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

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33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제34조 (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각 호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 유일한 발명가로 승인받기 위하여 공동발명자에게 의도적으로 특허 출원을 알리지 않는 행위

2.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3. 연구결과를 검증받기 위한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4. 연구계획이 해당분야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연구비를 지원받으려고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5.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6.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연구결과를 과대평가하는 행위

7.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8. 인간피험자 보호 및 실험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9. 연구비 유용행위

10. 연구업적 및 결과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제35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7.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 제36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 제37조** (텍스트의 재활용)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8조** (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2.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3.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4절 이해상충

- 제39조** (금전적 이해상충) ①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상당한 금전적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연구 차수 전에 본교와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과 연구팀, 연구기관 또는 본교의 금전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말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40조** (교원창업 및 연구수주 시 규정준수의무) ① 본교에 전임으로 소속된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창업이나 외부 활동 시에는 이 사실을 본교에 알려야 한다.
-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창업이나 외부 활동에 본교의 설비, 인력, 장비 등 본교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에 불가피하게 본교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교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 ③ 벤처사업과 관련된 연구자는 학생을 직원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하며, 교수로서 학생을 독립적 연구자로 발전시킬 책무가 있다.

- 제41조** (교원의 기본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와 강의를 동시에 담당할 때 한 직무의 수행

이 다른 직무의 수행과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과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② 교수로서의 의무이행과 외부활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시간과 지적 에너지는 교육, 연구, 학술활동, 학생지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 (과도한 외부활동 금지) 교수로서의 기본의무인 교육 및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의 외부활동이나 연구수주를 피하여야 한다.

제43조 (사적 상충)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며 보고하고 심사하는데 있어 사적 편견을 피 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44조 (심사 시 주의사항) ① 연구비 지원 과제 심사, 논문 심사, 인사 심사 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

② 피심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심사자의 기피사유) 가까운 동료가 제출한 연구비신청서나 논문 등의 심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46조 (지적 상충)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적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동연구의 제안, 심사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제47조 (관리의무) 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이를 보고하고 이해 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②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발생 할 수 있는 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자의 연구를 모니터하고,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점검해야 한다.

④ 이해 상충이 있는 연구자는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해석과 같은 연구의 중요한 과정이나 특정한 심사결정의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제1절 설치 및 운영

제48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며, 그 행위의 발생 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본교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제4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내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정기교육 등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4.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협력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대학원장, 교무처장, 공과대학장, 항공·경영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③ 당연직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연구협력팀장으로 한다.

제51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연구진실성 검증

제52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협력처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3조 (예비조사의 주체, 기간 및 내용) ①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② 예비조사는 연구협력처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27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54조 (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심의·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 ③ 본 조사 실시를 결정한 예비조사결과는 피조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④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3.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의혹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그 이유
5. 기타 주요 관련 증거 자료

제55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②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56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피조사자의 소속 대학장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 이 풍부한 교내 인사 4인 이상과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 3인 이상을 위촉하되 외부 인사의 비율은 30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위원회는 확정된 조사위원 명단을 본 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 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유가 정당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57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피조사자는 서면 혹은 구술로 조사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시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58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칙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제59조 (변론의 권리 및 이의제기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변론 및 이의를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 또는 논문명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피조사자의 역할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자의 명단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요 변론내용과 이의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61조 (판정) ①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승인·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절 검증 이후의 조치

제62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부정행위를 승인한 판정이 행해지고 재심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연구지원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63조 (결과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관련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협력처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1. (제정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관련규정 폐지)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